

# 제13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9.7.24.(서면심의)

## □ 안건명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134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

### 【주요 심의내용】

- 보도블럭 교체는 상태 및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필요시 교체토록 하고 보도환경개선을 위해 지주통합, 지장물 철거, 불법점용 해소 및 간판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
- 블록 선정시 고궁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블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
- 「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」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토록 할 것
- 「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」을 참고하여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
- 녹지대(수림대) 식재설계 관련 녹지대 내에 일정거리 간격으로 가뭄시 급수작업을 위한 관수시설(QC 밸브 등) 및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

첨부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 ○ 안건명 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목 및 공동	<p>○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이 없도록 보도블럭 상태 및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교체토록 할 것</p> <p>○ 블록 선정시 고궁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블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○ 보행환경개선 계획의 내용에는 단순 보도 폭 조정 및 차도정비 외에 지주통합, 지장물 철거, 노점상 등 불법점용 해소 및 간판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(p27)</p> <p>○ ‘5) 보행량,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’에서 서울특별시교통정보센터(TOPIS)자료(교통량 및 속도조사 등)를 조사·분석토록 할 것(p24)</p> <p>○ ‘6) 토취장, 골재원, 사토장 조사’에서 우리시 「사이버 흙은행」 시스템은 「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」에 통합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할 것(p24)</p> <p>○ ‘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’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토록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68)</p> <p>○ 배수시설에 대한 조사 및 계획은 『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(2018.1.22.)』의 강우강도식 기준을 적용할 것(p29, p46)                      ※ 강우강도 공식은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선관거(확률년수 10년), 간선관거(확률년수 30년)</li> </ul> <math display="block">\ln(I) = a + b \ln(t_2) + c (\ln(t_2))^2 + d (\ln(t_2))^3 + e (\ln(t_2))^4 + f (\ln(t_2))^5 + g (\ln(t_2))^6</math>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, I(t)는 강우강도(mm/hr), t는 강우지속기간(min), t<sub>2</sub>는 강우지속기간(hr), a, b, c, d, e, f, g, n은 지역상수이다.                 </p> <p>&lt;표 4.12-16&gt; 지역상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관측소</th> <th>계수</th> <th>10년</th> <th>20년</th> <th>30년</th> <th>50년</th> <th>80년</th> <th>100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7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서울</td> <td>a</td> <td>4.36595980</td> <td>4.49533595</td> <td>4.56295873</td> <td>4.64100594</td> <td>4.70779414</td> <td>4.73767920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-0.47749814</td> <td>-0.46598530</td> <td>-0.46010053</td> <td>-0.45468131</td> <td>-0.44901263</td> <td>-0.44734375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0.00980413</td> <td>0.00675486</td> <td>0.00498997</td> <td>0.00425370</td> <td>0.00232109</td> <td>0.00281870</td> </tr> <tr> <td>d</td> <td>-0.01174429</td> <td>-0.01374870</td> <td>-0.01484143</td> <td>-0.01600824</td> <td>-0.01691085</td> <td>-0.01763560</td> </tr> <tr> <td>e</td> <td>-0.01581568</td> <td>-0.01506422</td> <td>-0.01466076</td> <td>-0.01441877</td> <td>-0.01400834</td> <td>-0.01404067</td> </tr> <tr> <td>f</td> <td>0.00722670</td> <td>0.00734400</td> <td>0.00742285</td> <td>0.00753733</td> <td>0.00758195</td> <td>0.00770345</td> </tr> <tr> <td>g</td> <td>-0.00080495</td> <td>-0.00084213</td> <td>-0.00086541</td> <td>-0.00088975</td> <td>-0.00090768</td> <td>-0.0009269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재현기간별 1시간 강우강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0년</th> <th>20년</th> <th>30년</th> <th>50년</th> <th>80년</th> <th>100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I(mm)</td> <td>78.72</td> <td>89.60</td> <td>95.87</td> <td>103.65</td> <td>110.81</td> <td>114.1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관측소	계수	10년	20년	30년	50년	80년	100년	서울	a	4.36595980	4.49533595	4.56295873	4.64100594	4.70779414	4.73767920	b	-0.47749814	-0.46598530	-0.46010053	-0.45468131	-0.44901263	-0.44734375	c	0.00980413	0.00675486	0.00498997	0.00425370	0.00232109	0.00281870	d	-0.01174429	-0.01374870	-0.01484143	-0.01600824	-0.01691085	-0.01763560	e	-0.01581568	-0.01506422	-0.01466076	-0.01441877	-0.01400834	-0.01404067	f	0.00722670	0.00734400	0.00742285	0.00753733	0.00758195	0.00770345	g	-0.00080495	-0.00084213	-0.00086541	-0.00088975	-0.00090768	-0.00092690	구분	10년	20년	30년	50년	80년	100년	I(mm)	78.72	89.60	95.87	103.65	110.81	114.17	
관측소	계수	10년	20년	30년	50년	80년	100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	a	4.36595980	4.49533595	4.56295873	4.64100594	4.70779414	4.737679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	-0.47749814	-0.46598530	-0.46010053	-0.45468131	-0.44901263	-0.447343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	0.00980413	0.00675486	0.00498997	0.00425370	0.00232109	0.002818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	-0.01174429	-0.01374870	-0.01484143	-0.01600824	-0.01691085	-0.017635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e	-0.01581568	-0.01506422	-0.01466076	-0.01441877	-0.01400834	-0.0140406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f	0.00722670	0.00734400	0.00742285	0.00753733	0.00758195	0.007703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	-0.00080495	-0.00084213	-0.00086541	-0.00088975	-0.00090768	-0.000926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10년	20년	30년	50년	80년	100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(mm)	78.72	89.60	95.87	103.65	110.81	114.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p>○ 국토교통부 「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」을 참고하여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(DFS, Design For Safety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, 제거, 감소되도록 한다.</li> <li>(2)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.</li> <li>(3)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.</li> <li>(4)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</li> <li>(5)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,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li>(6)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,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(7)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. 등</li> </ul> </li> <li>-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(Hazard) 및 위험성(Risk)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(위험요소/위험성/저감대책)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(DFS)보고서</li> <li>(2)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</li> <li>(3)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 (위험요소/위험성/저감대책)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 및 동법 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대상 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 필요</p> <p>○ ‘기본 및 실시설계’임을 고려할때 ‘과업착수 후 20일 이내 기본설계 검토 보고서 제출’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 단계 과업(타당성 조사 등)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(p5)</p>	
전기	<p>○ ‘21.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’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1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기공사업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</li> <li>-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</li> <li>- 한전 전기공급약관, 한전공급규정</li> <li>-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및 규정</li> <li>-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</li> </ul>	

	<p>○ 3) 수전지점'의 아래사항을 수정할 것(p5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고압 수전시설은 기존 수변전시설 위치에서 부하 용량 증감에 따른 수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 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.</li> <li>⇒ 특고압 수전시설은 기존 수변전시설 위치에서 부하 용량 증감에 따른 수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.</li> </ul> <p>○ '4) 가로등 설치기준'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5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로등 설치 전 『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』 제22조에 의거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</li> <li>- 도로선형에 따른 조명의 적절한 배치·배열로 운전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li>- 등기구의 배광곡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등기구를 반영하여 인접 건축물 등에 빗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</li> <li>- 횡단보도 부근의 조명기구 배열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상황을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할 것 ⇒ 가로등은 주변의 다른 조명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, 도로와 도로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하여야 한다.</li> </ul>	
조경	<p>○ 설계방안 제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</p> <p>② 조경 분야 : 가로수 수종교체(→바뀌심기), 가로정원 및 띠녹지 조성, 벽면 녹화, 의자(→편의시설)설치 등(p.1)</p> <p>○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서울시 '공공조경가'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(p9)</p> <p>○ 1)이식설계와 관련 아래내용으로 수정할 것</p> <p>(5) 제거대상 수목은 작업환경과 주변여건 및 제반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내 제거 또는 타지역 반출 후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(p49)</p> <p>○ 2)가로수 식재 설계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(p49)</p> <p>(1) 보도조성시 보도내 가로수 식재를 설계에 포함하며 신규식재 및 바뀌심기는 관할구청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	

	<p>○ 4) 녹지대(수림대) 식재설계“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(p50)</p> <p>(5) 경관과 심미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목의 개화기를 고려하여 식재 계획한다.</p> <p>(6) 녹지대 내에 일정거리 간격으로 기물시 급수작업을 위한 관수시설(QC 밸브 등) 및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</p> <p>○ 6)식재기반 및 관리시설 설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</p> <p>(2) 급수, 영양공급 및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</p>	
<p>종합의견</p>	<p>조건부채택</p>	

2019년 7월 일

심의위원: 기술심사담당관 권 완 택 (서명)

본 검토서는 2019.7.19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과업의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) 과업의 내용에서 제시한 세부목차에 위계(Depth)의 차이가 있어 큰 목차와 동일하게 조사 및 분석, 계획업무, 설계업무, 성과품 작성 및 납품의 순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세부 목차를 정리하고 일부 누락된 항목(주민민원 의견 수렴 및 협의 등)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</li> </ul> <p>2.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과업은 “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”로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하는 과업으로 4) 기본설계 검토 보고의 내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 <p>3. 설계업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번호체계 수정이 필요함(앞장과 상이하고 중복된 번호 존재)</li> <li>- 분야별 상세지침에 7. 노선설계 내용이 있으나 본 과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○ 안건명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2019년 7월 19일

심의위원 : 고 주 연 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본 검토서는 2019.7.19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자구 수정</p> <p>(1) ‘건설기술인협회’는 ‘한국건설기술인협회’로 수정(4쪽 3번째 줄)</p> <p>(2) ‘계약자’는 ‘계약상대자’로 수정(4쪽 13번째 및 5쪽 16번째 줄)</p> <p>(3) 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’은 ‘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’으로 수정하고,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의 별지에서는 작업일지의 양식이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.(6쪽 (4) 작업일지의 작성, 14쪽 ①)</p> <p>2. 내용 추가 및 보완</p> <p>(1) 21.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에 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)’ 추가 바람</p> <p>(2) 23. 기타사항에 발주기관 요청시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요청에 의해 합동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,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므로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9년 7월 19 일

심의위원 : 서금열  (서명)

본 검토서는 2019.7.19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도로 · 공항	<p><b>1.제1장 일반사항</b></p> <p>5.과업수행 및 공정보고에서</p> <p>1)책임기술자,분야별참여기술자,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, 분야별참여기술인, 참여기술인으로 수정검토필요 (P3,4,5,6,11)</p> <p>2)기본설계검토보고에서</p> <p>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를 계약상대자는 전단계설계(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)시행된 경우로 수정검토필요(P5)</p> <p><b>2.제1장 일반사항</b></p> <p>8.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항목에서 “공사중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”추가반영 검토(P8)</p> <p><b>3.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</b></p> <p>1.조사항목 (9)(14)관련계획 자료조사가 중복되었으므로 수정검토(P17,18)</p> <p><b>4.제3장 계획업무</b></p> <p>2.의견청취를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 로 수정검토 (P27)</p> <p>3.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1)전단계성과품 검토에서 앞서 실시한 기본계획, 타당성조사가 기 시행된 경우에는 으로 수정검토(P28)</p> <p><b>5.제3장 계획업무</b></p> <p>7.경제성분석 (3)사업규모② 적정사업비산출에서 감리비를 건설사업관리비로 수정검토(P30)</p> <p><b>6.제4장 설계업무</b></p> <p>2.기본지침 3)5)(3)비교및검토(4)종합화 토목, 건축, 조경~에서 교통, 도시계획항목 부분 추가검토(P33,P35,P36)</p> <p>6)사용자재~(4)경제성, 내구성 외에 시공성 항목추가검토(P34)</p> <p>2.기본설계를 3.기본설계로 수정검토(P34)</p>	

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도로 · 공항	<p><b>7.제4장 설계업무 (P35)</b>  (4)종합화 ① 기능배치계획의 책정 (보행환경기본구상 및 시설배치계획) 항목 추가검토  ② 공사비 및 보상비배분계획의 책정(구간별) 항목추가검토  ③ 동선계획의 책정(이면도로 포함) 항목추가검토  ⑬ 통합다자인을 통합디자인으로 오타수정 검토  2)착수회의(P37)에서 (1)사업관련 ~ 개최되어야하고, 이때 대지현황을 주요현황으로 수정검토</p> <p><b>8.제4장 설계업무</b>  3.실시설계를 4.실시설계로 수정검토(P37)  (4)종합화에서 ⑫사업계획(소요예산산출,연차별시행계획,재원조달계획) 항목추가검토(P39)</p> <p><b>9.제4장 설계업무</b>  8.배수시설설계  9)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를 표면배수로 오타수정검토(P46)  18)특히 도시부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합쳐지는 교차로구간의 배수처리 취약구간에는 선배수 처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 내용 추가검토(P47)</p> <p><b>10.제5장 성과품작성</b>  6)설계예산서작성 (10)원가계산은 ~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)를(행정안전부)로 수정검토(P64)</p> <p><b>11.제6장 성과품납품</b>  2.성과품종류와 납품부수에서 교통처리계획도면 별도작성제출 추가검토(P68)</p>	
종합의견	<p><b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b> 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9년 7월 16일

심의위원 : 정 상 민

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조 경	<p>1. 35쪽, 책정은 결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</p> <p>(4) 종합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능 배치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<u>책정</u></li> <li>③ 공사비 및 보상비 배분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④ 동선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⑤ 방재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⑥ 시설 배치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⑦ 평면, 입면, 단면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⑧ 구조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⑨ 내외 환경 계획(조명, 소음, 방진, 공조 등)의 <u>책정</u></li> <li>⑩ 조경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⑪ 각종 설비(전기·전자, 기계설비, 통신 등)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⑫ 에너지 절약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⑬ 건축, 토목, 조경 등 관련분야의 통합 디자인 및 도시경관개선 계획의 <u>책정</u></li> <li>⑭ 시공 중 안전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<u>책정</u></li> </ul> <p>2. 39쪽, (4)종합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⑥ <u>색채 계획의 책정</u>은 →<u>색채계획</u>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</li> </ul> <p>3. 48쪽, 10. 조경설계</p> <p>(3)식재부 적기(여름철, 겨울철) → 식재 부적기(여름철, 겨울철)로 수정할 것</p>	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조 경	<p>4.49쪽, 10. 조경 설계</p> <p>(5) 제거대상 수목은 도로변 <u>안전사고예방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</u> →안전사고 예방으로 수정할 것.</p> <p>5. 50쪽, 3) 띠녹지 설계</p> <p>(5) 띠녹지 내 수목 선정 및 배치는 띠녹지 폭과 가로유형을 고려하여 서 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기관 및 감독관과 협 의하여 설계한다. →띠녹지 내 수목 선정 및 배치는 '<u>미세먼지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</u>' 띠 녹지 폭과 가로유형을 고려하여 ~~추가할 것.</p> <p>6. 50쪽, 4) 녹지대(수림대) 설계</p> <p>(1) 녹지대(수림대) 수목 배치 및 수종 선정은 주변 환경 및 도로여건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토양여건에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유지관리 및 수목수급의 용이성, 내진성,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을 선정하며 <u>미세먼지가 잘 흡수되도록</u> 관리기관 및 감독관과 협 의하여 설계한다.→ 추가할 것.</p> <p>7. 50쪽, 5) 50쪽, 구조물 벽면녹화 설계</p> <p>(1) 시각적으로 불량한 구조물 경관은 <u>벽면녹화를 반영하여 도로경관을 향 상시키고 녹시율을 증가토록</u> 도모한다. → 벽면녹화를 계획하여 녹시율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를 흡수 하게 하는 등 도로경관을 개선한다.로 수정할 것.</p>	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9년 7월 17 일

심의위원 : 이 선 화 (서명)

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시공	<p>제1장 일반사항</p> <p>4. 과업의 범위의 내용을 추가요</p> <p>P29 4.환경영향검토(필요시)</p> <p>(1)소음 및 <u>하천</u>에 대한 대책 검토→ 소음 및 <u>진동</u>에 대한 대책 검토가 아닌지?</p> <p>인근주거 등에서 소음을~ 검토하여야 하며, 공사 중 <u>하천</u>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.→ 공사 중 <u>소음과 진동</u>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6. 노선 및 구조물 형식·공법계획</p> <p>(1)선형설계</p> <p>①경제성, 안전성 및 효율성</p> <p>-석축 및 옹벽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~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→ <u>과업개요</u>에 석축 및 옹벽구조물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</p> <p>- 공사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여건을 ~ 낙석방지책정비에 따른 사면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→<u>과업개요</u>에 낙석방지책정비에 따른 사면안정성확보 방안제시는 도심인데 사면이 구조물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</p> <p>P38 (6) 도면과 시방서는 <u>이용자수와 형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→ 도면과 시방서는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현장과 일치할 수 있도록 조건 충족되어야하고,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 또는 표기된 내용을 시공사가</p>	

건설공사를 시공성, 안전성, 품질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(8) 사업완료 이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.

i) 용역내용

(1) 정보수집 및 준비

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→ 각종 법령의 절차에 따른 협의

P39 (4) 종합화

① 외부 공간설계

② 내부 공간설계

→①, ②는 과업범위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.

P40 (5) 기타

①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
→ 각종 법령의 규정한 절차를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

P41 8) 색채와 재료 견본

계약상대자는 ~ 색상조화를 고려하고,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(외부 및 실내마감재)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.

(1)외부 마감 재료계획

(2)내부 마감 재료 계획

→ 재검토한 후필요하면 반영할 것

P54 14. 유지관리시설

3) 사면유지관리 등 지속적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용 지침서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.

→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지속적 유지관리가 가

	<p>능하도록 유지관리용 지침서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※ 도심지인데 사면표현은 잘못</p> <p>15. 공사 설명제</p> <p>(4) 추가 삽입</p> <p>→지하에 매몰되는 구조물 등에는 전, 중, 후 사진촬영 보관한다.</p>	
<p>종합의견</p>	<p>조건부 채택</p>	

2019년 7월 18일

심의위원 : 김 홍 흠 